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2014~2018)

2015. 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목 차

제1장 수정계획 수립 개요	1
1. 수정계획 개요	2
1)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수정계획의 목적	3
2. 수정계획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4
1) 수정계획의 기본방향	4
2) 수정계획의 주요내용	5
3. 수정계획 범위 및 추진경위	13
1) 수정계획의 범위	13
2) 수정계획의 추진경위	14
4. 수정계획의 중점 검토사항	15
1) 어업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수요 반영	15
2) 새로운 어촌·어항 정책기조 반영	16
3) 실행력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재편	17
제2장 어촌어항 여건변화와 개발수요 변화	19
1. 어촌·어항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	20
1) 어항기능 다변화에 따른 어항지정기준 현실화	20
2) 탄력적인 항종변경을 위한 어항 Up-Down 제도 도입	20
3) 관련법률 제·개정에 따른 어촌·어항의 정책환경 변화	20
4)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21

2. 여건변화에 따른 어촌·어항 개발수요 변화	22
1) 국가어항 개발수요의 변화	22
2) 레저관광어항 개발수요와 전망	22
3)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23
4) 어촌관광 수요와 인바운드 시장 확대	23

제3장 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4

1. 기본계획 검토	25
1) 어항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5
2) 어촌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6
2. 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7
1) 어항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7
2) 어촌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8

제4장 부문별 추진과제 29

1. 탄력적인 어항개발 추진	30
1) 국가어항 확대개발 추진	30
2) 어항지정기준 개정 추진	31
3) 어항 지정 Up-Down 제도 도입	32
2.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개발	33
1) 노후어항 정비 및 해양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한 정비 확대	33
2) 어항의 특화개발 확대 추진	37
3) 수산물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청정어항 도입	37
4) 지방어항 개발수요	38
3.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39

1) 어촌 6차산업화 확대 추진	39
2) 명품 어촌·어항 조성	41
3)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42
4) 어촌마을 리모델링 통한 정주환경 개선	43
5) 어업유산 지정·관리	44
4. 어촌·어항정책의 선진화 방안	45
1) 어항 운영·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	46
2)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수립	46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47
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투자방향	48
2. 수정계획 투자소요 예산	49
1) 수정계획 총괄 예산	49
2) 당초계획 대비 총괄 소요예산	53

제1장 수정계획 수립 개요

제1장 수정계획 수립 개요

1. 수정계획 개요

1)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 정책방향으로써 '14년 3월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고시
- '14년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개발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국내·외 수산업·어촌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책환경에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수정계획 마련
- 『어촌어항법』 제4조에서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어촌어항법)

제4조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5.1.12.)과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2015. 6) 등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된 어촌·어항 정책 마련

* 3대 추진전략·9대 과제 제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6차산업화,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마을 조성 방안 등 제시

** 어촌 6차산업화 및 다기능어항으로 개발·전환하여 창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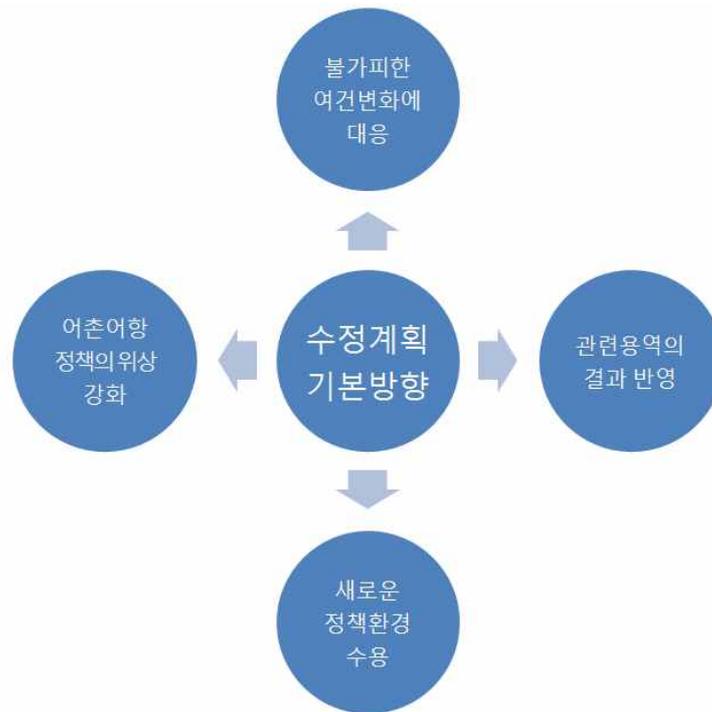
- 다기능어항 및 어촌 6차산업화 확대, 명품 어촌·어항 개발, 어촌어항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추진 등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의 신규·확대 추진 필요
- 한·중 FTA 협상 타결(2014. 11) 등 전방위적인 FTA 체결 가속화로 인해 어촌·어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필요
- 수산업·어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추진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체제와 예산확보 등 사업 집행력 제고
 -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과 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관련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수요 변화의 당위성을 마련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수정계획의 목적

- (목적) 어촌·어항을 둘러싼 수산업 여건변화와 정부의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2014~2018)에 대한 수정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행할 어촌·어항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 2013년 기본계획 수립 시점과 달라진 수산업 여건변화와 새로운 어촌·어항 정책수요에 따른 실제 개발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이후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등 개정된 관련 법제도 변경과 한·중 FTA 체결 등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추진 등 불가피한 부문을 조정하고자 함

2. 수정계획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수정계획의 기본방향



- (여건변화 대응) 어촌·어항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책 환경 등 불가피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
 - 수정계획은 기후변화, FTA 체결, 어업여건 등 불가피한 여건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명품 어촌·어항 개발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위상강화) 어촌·어항의 종합적인 법정계획으로써 관련계획 및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절차 등 수정계획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감
 - 수정계획은 지자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된 사업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정책 추진과제 결과 반영) 수정계획은 어촌·어항의 개발수요 변화와 새로운 정책개발 등 정책 추진과제 관련용역 결과 반영
 -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국가어항 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2015)」 등 관련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수요 변화 등 반영
 -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연구(2015)」,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2015)」 등 새로운 정책환경과 대외 여건변화에 따른 용역 결과 반영

- (새로운 정책환경 수용) 「어촌리모델링법」 제정(2014.7.15. 시행),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2015.8.4. 시행),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개정(2014.9 시행) 등 관련법률 제·개정에 따라 새로운 정책환경 반영

2) 수정계획의 주요내용

(1) 미래산업화의 중심으로 어항개발

□ 어항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 (국가어항 신규개발) 지방/어촌정주어항 중 수산여건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어항 이용도가 현저하게 높아진 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여 개발
 -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만족하거나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요기능을 갖는 어항의 신규 개발을 통해 연안지역의 경제중심지 역할 수행
 - * 수산거점기능(7개항) : 소래포구항, 무창포항, 초평항, 장목항, 송도항, 개야도항, 진두항
 - * 교통·관광·유통기능(3개항) : 삼진항, 당목항, 오천항
 - * 단, 예산확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5년 및 2016년에 단계적으로 추진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결과 반영)

- (지방어항 신규개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설 부족 및 사용 불편이 나타나는 어촌정주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신규개발 추진
 - 지방어항 지정·개발 협의 시 어항지정 Up-Down제 도입에 따라 해당 시·군 내 이용이 저조한 지방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하향 조정
 - 지방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이용 활성화 정도, 개발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시급성 등을 검토
 - * 지방어항 완공율이 저조한 시·군은 신규개발보다 기존 지방어항의 완공위주 집중투자를 유도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결과 반영]

- (어항정비사업 지속 추진) 어항 노후화 및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 * 시설 노후화 어항정비(40개 항) : 선진포항, 덕적도항, 울도항, 장봉항, 공현진항, 아야진항, 금진항, 덕산항,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 안흥항, 모항항, 어청도항, 연도항(전북), 말도항, 계마항, 안마항, 서거차항, 녹동항, 청산도항, 소안항, 가거도항, 전장포항, 어란진항, 사동항(전남), 풍남항, 돌산항, 원평항, 축산항, 감포항, 읍천항, 대보항, 구조라항, 다대다포항, 외포항, 능양항, 신양항, 사동항(경북), 현포항
 - * 어선이용 활성화에 따른 기본시설 확충(3개 항) : 원전항, 광암항, 삼덕항
 - * 수제선 정비등 어항환경개선(5개 항) : 낭도항, 시산항, 수품항, 발포항, 삼길포항
 - * 항내 매물, 침수방지 대책 수립(4개 항) : 대진항(경북), 신수항, 오천항, 흥원항
 - * 관광 활성화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확충(6개 항) : 대진항(강원), 대포항, 남애항, 강릉항, 정자항, 마량항

- (어항 구조개편) 항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어항지정 Up-Down 제도’ 도입*과 이에 대한 실행성의 제고를 위해 어항 지정기준 변경 및 해제기준 신설 등 법·제도 개선 추진
 - * 이용도가 높고 활성화된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하고, 반대로 이용도가 낮은 국가어항은 지정·해제 또는 하향 조정
 - * ‘16년도에 동·서·남해권역로 각 1개소 Up - Down제 시범 도입

□ 지역여건에 맞는 어항의 특화개발

-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어항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3가지 유형(복합형, 피셔리나형, 낚시관광형)의 다기능어항 10개항 선정·개발
 - 어항이 가지고 있는 어업기능 및 다양한 부가기능을 특화시키고 어항을 어촌지역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여 어항의 브랜드가치 제고
 - * 복합형(5개항) : 다대포항, 저동항, 옥지항, 남당항, 서망항
 - * 낚시관광형(3개항) : 위도항, 능포항, 안도항
 - * 피셔리나형(2개항) : 위미항, 물건항

- (아름다운 어항) 기능적, 심미적, 문화적 아름다움을 갖춘 국가 어항중 지역 대표 명소로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자체 공모방식을 통해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 4개소 지정·개발
 - 어항을 한국형 아름다운 명소 브랜드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가치의 창출 도모
 - * 아름다운 어항(4개항) : 수산항, 미조항, 격포항, 김녕항

- (어촌 마리나역) 어항을 어업겸용 소규모 마리나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해상 간이역” 기능의 어항으로서 입지여건,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종 16개항 선정 및 14개항 개발
 -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를 도모함과 동시에 어항 기능의 다각화·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어촌지역 소득 창출
 - * “어촌 마리나역” 선정 대상항
 - 기개발(2개소) : 오산항, 격포항
 - 신규개발(9개소) : 대진항(강원), 삼길포항, 전장포항, 우이도항, 서거차항, 초도항, 연도항(전남), 매물도항, 신양항
 - 다기능어항 대상항(5개소) : 남당항, 저동항, 물건항, 옥지항, 위미항

□ 어항 운영 · 관리 선진화

- (운영 · 관리 전담기관) 어업세력권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어항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항 운영관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어항의 운영 · 관리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정

- (어항 성공모델 수출전략) 다기능어항 등 어항의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모델로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

1 어항을 미래 성장산업화의 중심으로 육성

어항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

국가어항
추가지정



5개소 →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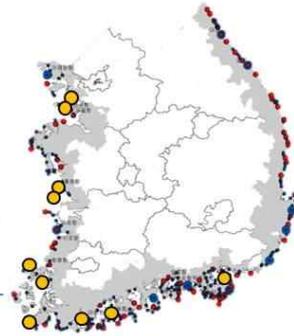
정비사업
대상추가



17개항

법제도 개선

어항지정 Up-Down제 도입
어항해제기준 도입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어항 개발



다기능 어항 확대개발
10개항(복합, 낚시관광, 피서리나)



아름다운 어항
3개소 → 4개소



어촌 마리나역
16개항 선정 9개항 개발

어항 운영 · 관리 선진화



어항 운영 · 관리 네트워크 구축



어항 운영 · 관리 고도화
어항 운영 · 관리 전담기구 설립 · 운영



경제발전 공유사업(KSP)
다기능어항

(2) 전통산업에서 어촌산업으로 전환, 명품 어촌개발

□ 융·복합, 어촌 6차산업화 확대 추진

- (6차산업화 지원 확대) 다양한 어촌자원을 활용하여 2차(제조·가공), 3차(유통·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융합·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15년 시범사업(10억, 2년) 이후 본 사업(30억, 3~5년)으로 확대 추진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2조의2항 개정<2015.3.27.>으로 보조 및 융자와 관련된 지원근거 마련
 - *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지원, 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 지원
 - * ('16년) 10개소 → ('17년) 10개소 → ('18년) 10개소
- (6차산업화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원센터는 6차산업화 사업자 부족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인큐베이팅(Incubating) 지원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항 개정<2015.3.27.>으로 어촌특화발전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역별 3개소에 대해 단계적 확대 추진
 - * ('16년) 3개소, 5억 → ('17년) 3개소, 5억 → ('18년) 3개소, 5억
- (6차산업화 성과관리 강화) 6차산업화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사업추진 문제점 개선과 정책확대의 당위성 확보
 - 사업성과 모니터링은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단계에 맞는 사업성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
 - * 단계별(계획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 접근과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전담 추진

□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한 어촌·어항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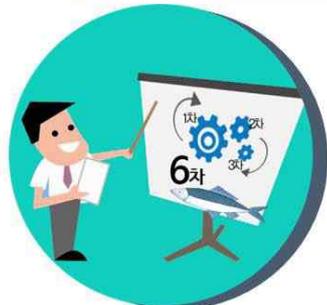
- (명품 어촌·어항 조성) 해양경관, 어촌의 역사·전통 및 해양레저 등을 바탕으로 품격 높은 어촌의 문화, 어촌다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10대 명품 어촌어항 조성
 -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어항('14.12 선정) 배후 어촌마을 개발 이후, 중·장기적으로 확대(총 10개소) 조성 방안 강구
 - * 시범사업 : 아름다운 어항 4개소(수산항, 미조항, 격포항, 김녕항) 우선적 추진
- (성공적 어촌개발 모델 수출)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등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개도국 대상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등 성공적인 어촌개발모델 수출 전략 마련
 -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 정비방안 마련 및 KSP 모델로 개도국에 어촌개발모델 수출로 국제적 위상 제고
 - * (신규)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 어촌 정주기반 강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어촌마을 리모델링) 낙후된 어촌의 정주환경(주거, 하수, 문화·복지 등) 개선을 위한 어촌마을 정주환경 리모델링 사업 정책방향 수립 및 단계별 추진
 - 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어촌지역 하수도 정비, 빈집 정비 등 추진
- (낙도지역 복지 사각지대 지원) 낙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사업 발굴

2 전통수산업에서 어촌산업으로 전환, 명품어촌 개발

융복합 어촌 6차산업화 확대



6차산업화 지원규모 확대
'18년까지 35개소 추진(10억→30억)



6차산업화 지원센터 지정·운영
해역별 3개소, 15억



성과관리 강화(사업지 관리)
5억원 → 10억원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한 어촌·어항 경쟁력 강화



명품 어촌·어항 조성
'18년까지 4개소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KSP(어촌체험마을, 어촌주민역량강화)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어촌·어업인의 정주 기반 강화



어촌마을 리모델링
'18년까지 3개소(30억원/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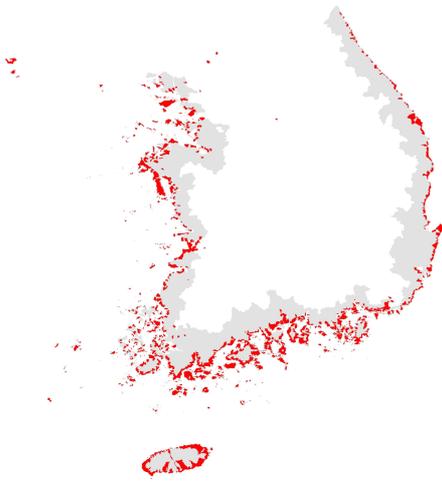
낙도지역 복지 사각지대 지원

3. 수정계획 범위 및 추진경위

1) 수정계획의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 계획기간은 2014~2018년으로 변동이 없고, 공간적인 범위는 어촌어항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촌과 어항을 대상으로 함
- * 어촌 :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동 지역(동 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 ** 어항 :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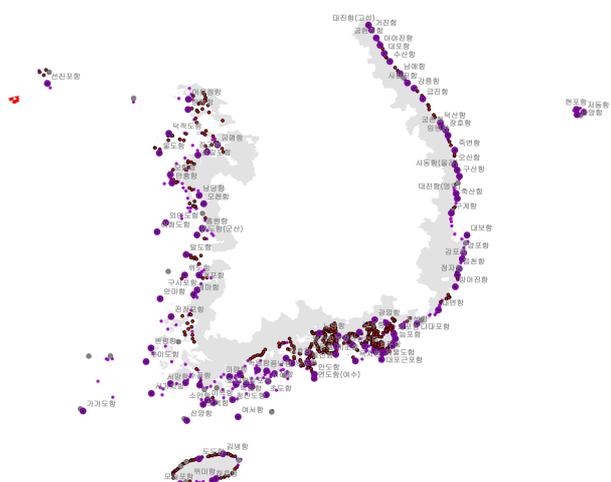
어촌 공간적 대상



시군구 ; 72개 연안 시군구

읍면동 ; 560개소

어항 공간적 대상



국가어항 : 109개소

지방어항 : 289개소

어촌정주어항 : 596개소

마을공동어항 : 없음

- (계획의 내용적 범위) 수정계획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사업과 투자계획 변경내용을 제시
 - (여건변화 및 전망) 수산업과 어촌·어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통해 어촌어항 개발수요 변화 및 종합적인 전망 제시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비전·목표, 추진전략 중 수정계획의 흐름에 맞춰 주요지표를 재설정하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어업어촌발전기본계획 등과 연계성 제고
 - (추진과제)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변경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수정계획의 투자소요 예산을 추정하고, 국가 재정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

2) 수정계획의 추진경위

- (착수회의) 2015. 3. 10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착수회의
- (1차 회의) 2015. 4. 1 어촌어항 여건변화 및 정책환경 변화 논의
- (2차 회의) 2015. 5. 10 부문별 사업계획 취합 및 업무협의
- (계획 확정) 2015. 6. 10 수정계획(안) 확정 및 내부결재
- (관계기관 협의) 2015. 6. 23 중앙관계기관 협의
- (확정·고시) 2015. 7. 고시

4. 수정계획의 중점 검토사항

1) 어업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수요 변경

- (국가어항 신규개발) 기존 시설확충 수요(어선안전수용율) 및 어항 지정기준의 개편 등 양적수요 외 해상교통·관광·유통 등의 질적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5개항에서 10개항으로 확대 개발 추진
 -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결과, 사회·경제적 여건, 어선 이용실태, 지역별 개발 수요,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개발 수요 확대
 - * 개발수요(기존→변경) : 국가어항 신규지정·개발(5개항 → 10개항)
- (어항정비사업 지속 추진) 어항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수요 뿐만 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정비수요를 고려하여 어항정비사업 대상항을 58개항으로 확대
 - 수산여건 및 어항의 이용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정비수요를 고려하여 국가어항 정비사업 지속 추진
 - * 개발수요(기존→변경) : 어항정비사업(42개항 → 58개항)
-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지자체 공모 및 개발여건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기존 4개 특화유형(복합형, 피서리나형, 낚시관광형, 자원조성형)에서 자원조성형을 제외한 3개 유형으로 조정
 -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은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 평가에서 적정 대상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
 - 개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복합 및 낚시관광 유형의 확대 추진
 - * 유형별 개발수요(기존→변경) : 복합형(3개항→5개항), 낚시관광형(1개항→3개항), 피서리나형(5개항→2개항), 자원조성형(제외)

- (아름다운 어항 조성) 지자체 공모 및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동·서·남해 3개소에서 **제주지역을 포함한 4개소로 확대*** 개발 추진
 -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2015)」 결과, 제주지역은 동·서·남해와 차별되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타 해역과의 매력성과 차별성을 고려
 - * 개발수요(기존→변경) : 아름다운 어항(3개 항 → 4개 항)
- (어촌 마리나역) 입지여건, 이용실태, 개발 잠재력 등의 평가 및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 수렴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한 16개소로 수요 조정***
 -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2015)」 결과, 선정된 어촌 마리나역 20개소 중 개발여건이 타당하지 않는 4개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
 - * 개발수요(기존→변경) : 어촌 마리나역(20개 항 → 16개 항)

2) 새로운 어촌·어항 정책기조 반영

- (명품 어촌·어항 조성) 어촌·어항의 정주여건 개선과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 브랜드가치를 창출함으로써 10대 명품 어촌어항 조성**
 - **요우커 등 인바운드 시장과 국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된 어촌·어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
 - * 요우커(천명) : (05)710 → (14)6,127, 국민 여가시간(시간) : (06)5.3 → (14)5.8
 - * 개발수요(신규) : 명품 어촌어항 조성(10개소, 소요예산 500억 반영)
- (성공적인 어촌개발모델 수출) 개도국 대상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등 **성공적인 어촌개발모델 세계화 전략 마련**
 - 요우커 등 인바운드 관광시장('19년 13백만 명)을 어촌관광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국내외 전략 수립
 - 어촌주민 역량강화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KSP 어촌개발 모델을 ODA 사업으로 추진

- * 개발수요(신규) : ('16)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계획 수립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어촌어항 기반 강화) 어업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어항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해 선진화된 운영·관리 시스템 도입
 - (매뉴얼 개발) 표준화된 어항의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과 보급, 어항 관계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전문 지원기관) 어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어항세력권 단위로 통합적인 운영·관리 추진
- * 개발수요(신규) : 매뉴얼 개발 및 전문 지원기관 지정운영(투자 소요예산 30억)

3) 실행력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재편

- (어촌종합개발계획) 기존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어촌의 고유한 특성과 거버넌스 등 바다적 관점에서 권역별로 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용역 추진 후 사업방향 재정립*
 - * 어촌어항법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정책연구('15) 및 기본계획('16) 추진
 - * 개발수요(신규) : 권역별 시범사업 3개소 추진('18년 이후)
- (어업유산 지정·관리) 기존 문화어촌 구축은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과 어촌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명과 사업방식을 어업유산 지정·관리로 변경*하여 추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에 법적근거를 마련(2015.2.3 신설)하여 추진
 - * 개발수요(신규) : ('15) 2개소(1.4억) → ('16~ '18) 매년 2개소(3억)
- (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기존 아름다운 어촌가꾸기와 어촌특화민박 조성은 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으로 사업명과 사업방식 변경하여 추진
 - 「어촌리모델링법」 제정(2014.7.15 시행)에 따라 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와 사업추진 방식이 마련되어 이에 근거하여 추진

- 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연구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로드맵 반영

* 개발수요(신규) : ('16) 기본계획 수립 → ('17) 1개소(시범사업) → ('18) 2개소

- (낙도지역 복지 사각지대 지원) 기존 원격진료지원과 생활밀착형 복지지원을 '낙도지역 복지 사각지대 지원'으로 통합하여 추진

- 낙도지역 복지 실태조사(정주여건, 보건·의료현황, 어업인 질환 및 재해 현황, 낙도특화산업 등) 및 기본계획 마련*

* 개발수요(신규) : ('15)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확보

- (청정어항 도입) 기존 클린어항 육성과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을 통합하여 청정어항 도입

- 청정어항 도입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어항구역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 개발수요(신규) : ('15) 기본계획 수립 → ('16~ '18) 시범사업 1개소 추진

제2장 어촌어항 여건변화와 개발수요 변화

1. 어촌어항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
2. 여건변화에 따른 어촌어항 개발수요 변화

제2장 어촌·어항 여건변화와 전망

1. 어촌·어항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

1) 어항기능 다변화에 따른 어항지정기준 현실화

- (어항지정기준 현실화) 어항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수산기능 외에도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방관리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개정*
 -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가어항 지정 가능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신설(2014.9.25)

2) 탄력적인 항종변경을 위한 어항 Up-Down 제도 도입

- (어항 구조조정) 이용이 활성화된 지방관리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유희어항*의 항종을 조정하여 기능 재배치, 민간매각 등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어항 Up-Down 制” 도입
 - * 유희어항이란 어업 및 해양환경 여건변화로 인해 어항의 기능이 상실되어 회복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어항구역을 한정된 기간 또는 일부에서만 이용하여 활용이 낮은 어항
 - 항종간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 구조개편 및 유희어항 민간 매각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여 어항 재개발에 투자하도록 법·제도 개선

3) 관련법률 제·개정에 따른 어촌·어항의 정책환경 변화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개정(2014.9)에 따라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례조항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

*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

- *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어촌리모델링법」 제정(2014.7.15. 시행) ,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2015.8.4. 시행) 등 관련법률 제·개정에 따라 추진과제 조정 필요
 - (어촌리모델링) 어촌리모델링법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행됨에 따라 낙후되고 노후화된 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등 새로운 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 * 기존계획(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어촌특화민박, 어촌 정주환경개선)의 추진과제를 통합하여 어촌리모델링사업으로 재편
 - (어업유산 지정·관리)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독립적인 사업체계를 마련
 - * 기존계획(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어촌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추진과제를 어업유산 지정·관리로 통합

4)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한중 FTA 등 시장개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 (FTA 보완대책)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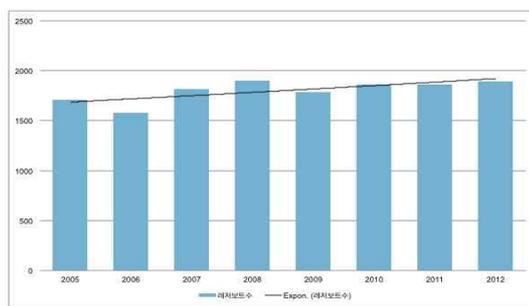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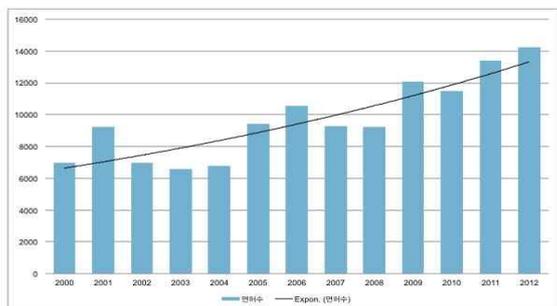
2. 여건변화에 따른 어촌·어항 개발수요 변화

1) 국가어항 개발수요의 변화

- 현재의 어항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국가어항이 45개소에 이르고, 어항의 다면적 기능 및 수산업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 현실화* 필요
 - * 재적어선 척수 및 톤수의 기준치 조정, 어선 입출항 횟수 도입으로 정확성 제고
- 새롭게 개편되는 어항지정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지방관리 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확대 개발*이 가능한 어항은 20개소로 나타남
 - *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 지방어항 16개소, 어촌정주어항 4개소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어항으로 확대 개발*이 가능한 어항은 14개소로 나타남
- (신규지정 수요) 개편되는 어항지정기준과 특례규정에 따라 국가어항 총 개발수요는 34개소이며, 총수요의 1/3인 10개항을 신규로 지정

2) 레저관광 개발수요와 전망

- 어항을 중심으로 어선은 감소하는 반면 레저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 기반구축이 필요
 - * 어선척수(척) : ('00) 95,890 → ('13) 71,287 → ('19) 60,000(추정)
 - * 낚시어선 이용객수(천명) : ('00) 667 → ('12) 2,155, 요트(척) : ('09) 4,840 → ('12) 9,048



3)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 동북해 원전 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

*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kg) : ('00) 36.8 → ('14) 54.9

* 식품안전 인식도 조사(2011) : 어패류(91%) > 육류(89.6%) > 채소류(88.2%)

- 하지만 어항구역 내 육역에서 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해요소로부터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필요

4) 어촌관광 수요와 인바운드 시장 확대

- 어촌체험마을은 2013년 기준 122개소 지정되었으며, 직접적인 체험객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어촌관광) 국민 소득수준 향상,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인해 어촌·어항의 관광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 전망*

* 주말 여가시간 : ('06)5.3 → ('14)5.8, 어촌관광객(백만명) : ('11)236 → ('19)300(추정)

-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요우커(旅客)가 빠르게 인바운드 관광시장 주도 전망*

* 방한 중국관광객(명) : ('14) 5,390,000 → ('19) 13,220,000

제3장 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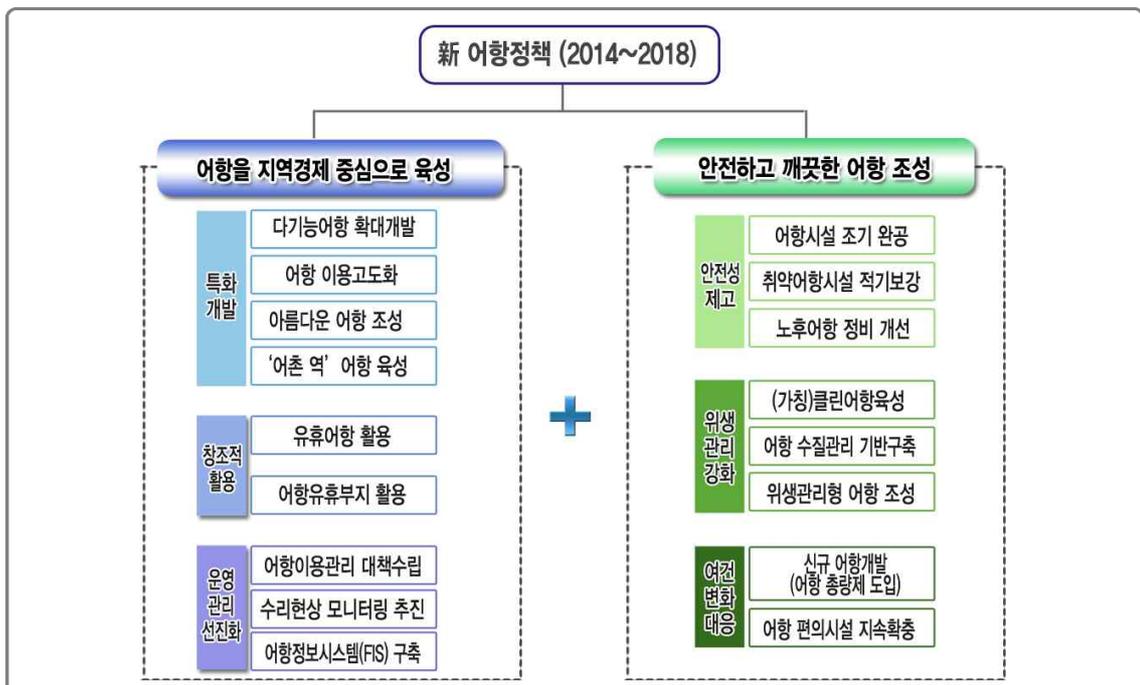
1. 기본계획 검토

2. 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기본계획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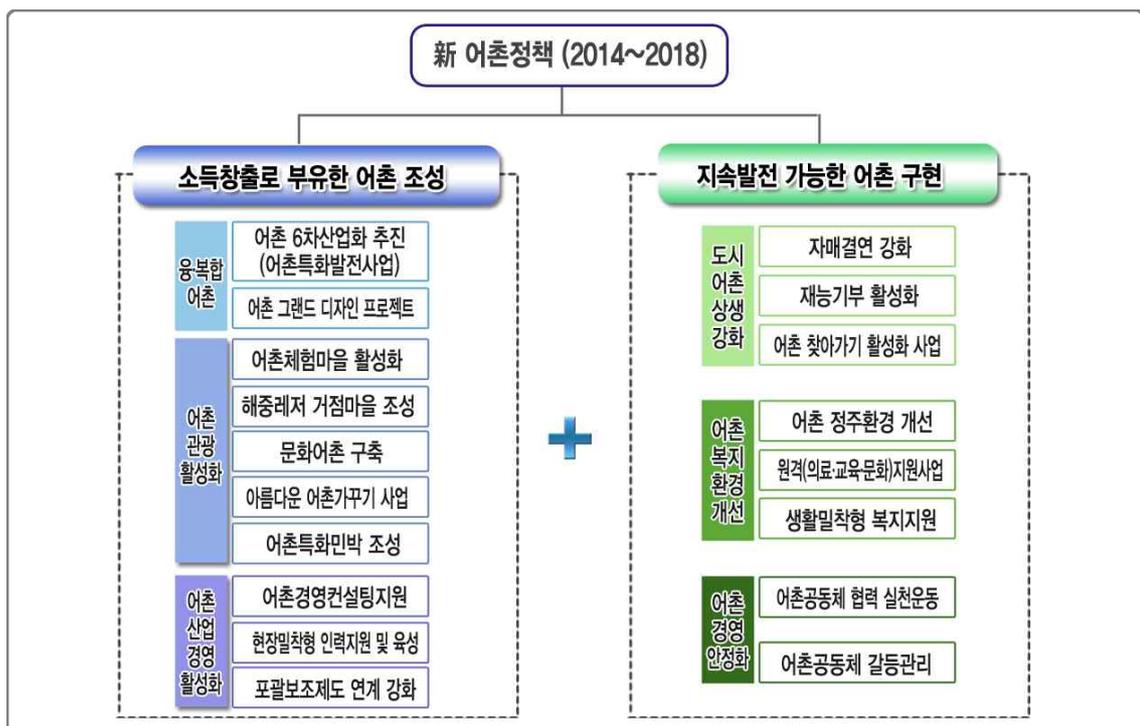
1) 어항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기 수립된 중기 어항정책은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특화된 어항개발, 창조적 활용, 운영관리 선진화)과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안전성 제고, 위생관리 강화, 여건변화 대응)을 목표로 17개 과제 추진
 - (특화개발) 용역 결과 및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지자체 개발수요 반영(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해역별 형평성**(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중복에 따른 사업량 조정**(어촌 마리나역 육성) 반영
 - (안전성 제고) 침식·매몰 등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비대상 어항 17개소 반영 필요
 - (위생관리강화) 유사·중복성이 있는 3개 사업(클린어항 육성,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을 통합하여 정책의 명료성과 실행성 제고
 - (여건변화 대응) 어항의 다면적 기능 및 수산업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 현실화 및 특례조항으로 국가어항 지정 확대 반영



2) 어촌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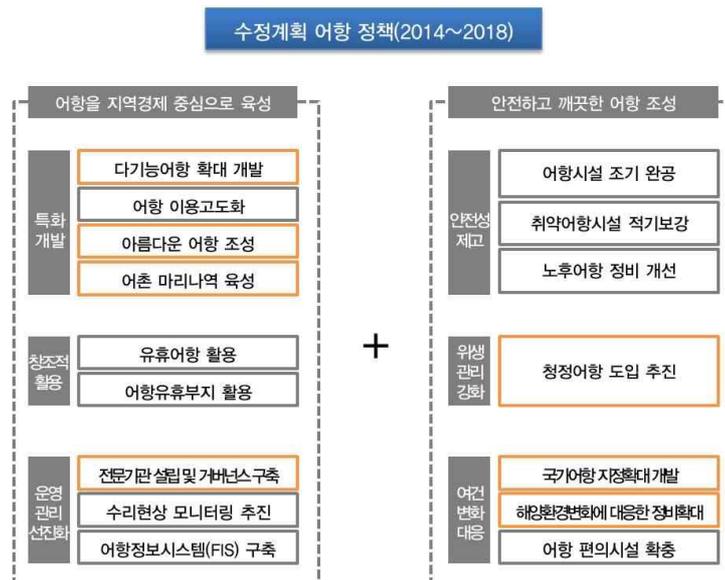
- 기 수립된 중기 어촌정책은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융복합 어촌,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과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도시·어촌 상생강화, 어촌 복지환경 개선, 어촌경영 안정화)을 목표로 18개 과제 추진
 - (융복합 어촌) 어촌 6차산업화 사업확대와 어촌·어항·어장의 통합적 개발 등 새로운 정책기조가 대두로 제시되었던 어촌 그랜드 디자인프로젝트를 새로운 사업으로 재편
 - (어촌관광활성화)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대두와 새로운 법률 시행에 따라 어업유산의 체계적 발굴과 활용 필요
 - (어촌 복지환경 개선) 유사성이 있는 어촌관광활성화(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와 어촌복지환경개선(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하나로 통합하여 어촌 복지환경 개선으로 재편하고, 어촌복지환경개선(원격지원사업, 생활밀착형 복지지원)의 사업도 통합하여 실행성 제고



2. 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어항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수정계획의 어항부문 목표는 기존 정책목표와 동일하며,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책수요 반영, 유사·중복 사업 통합을 통해 6개부문, 16개 과제로 재편
 - (특화개발) 특화된 어항개발의 세부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책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성과 제고
 - * 다기능어항 확대(공모 및 평가로 유형별 사업량 조정), 아름다운 어항(해역별 형평 고려 1개소 추가), 어촌 마리나역(기 완료, 중복으로 4개소 제외)
 - (운영관리 선진화) 어항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화
 - (위생관리 강화) 기존 사업들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청정어항 도입 및 시범사업 후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 (여건변화 대응) 어항의 다원적 기능확대를 위한 어항개발 수요 및 침식·매몰 등 어업·해양환경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2) 어촌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수정계획의 어촌부문 목표 역시 기존 정책목표와 동일하며, 융복합과 디자인 등 새로운 정책기조의 대두, 법제도 제개정에 따라 사업추진 개편 등을 통해 6개부문, 15개 과제로 재편

- (융복합 어촌) 융복합 어촌개발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한 어촌의 정책환경 변화와 통합적 어촌개발을 위한 정책기조 대두*를 반영

* 정책환경 변화(어촌특화발전법 개정으로 지원근거 마련, 기본계획 결과에 따른 35개소 반영), 새로운 정책기조 대두(명품 어촌어항 개발 수요 10개소 반영,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12개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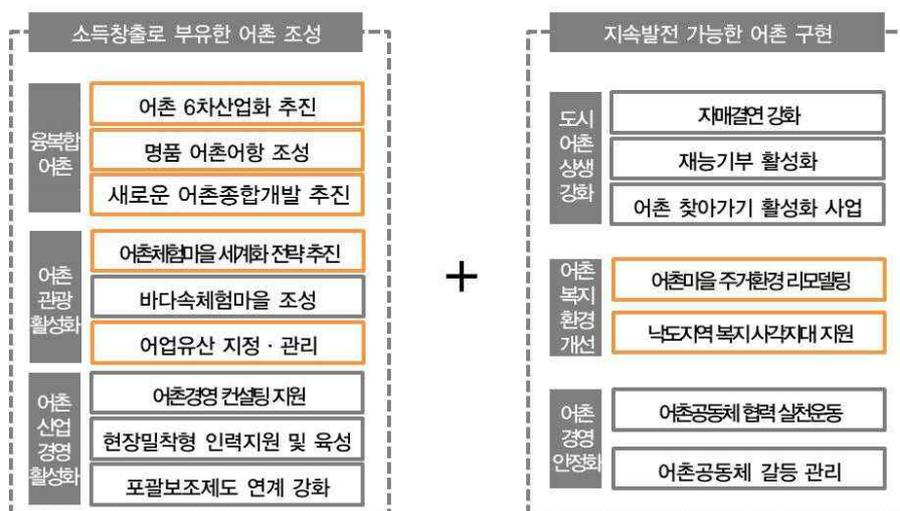
- (어촌관광활성화) 성공적인 어촌개발 모델에 대한 수출전략 마련과 새로운 법률(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에 따른 사업 반영*

*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 반영(어업유산 지정·관리, 매년 2개소 추진)

- (어촌 복지·환경 개선) 유사·중복성이 있는 기존사업을 통합하되, 새로운 법률(어촌리모델링법) 제정에 따른 사업에 통합시켜 반영*

* 법률 제정에 따른 사업 반영(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18년까지 3개소 반영)

수정계획 어촌 정책(2014~2018)



제4장 부문별 추진과제

1. 탄력적인 어항개발 추진
2. 여건변화를 고려한 어항개발
3.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4. 어촌어항 정책의 선진화 방안

1. 탄력적인 어항개발 추진

1) 국가어항 확대개발 추진

(1) 사업개요

- 10개 지방관리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을 국가어항 확대 개발을 위한 지정·개발 추진('14~'18)

(2) 사업내용

- 국가어항 확대 개발을 위한 지자체 수요 파악 및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해 예비대상항 10개소 선정('14.12)
 - * 수산거점기능(7개항) : 소래포구항, 무창포항, 초평항, 장목항, 송도항, 개야도항, 진두항
 - * 교통·관광·유통기능(3개항) : 삼진항, 당목항, 오천항
- 5개항 신규지정,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15)
 - * 1차 국가어항 신규지정항 : 소래포구항, 무창포항, 초평항, 장목항, 삼진항
- 5개항 개발 착수 및 추가 5개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16)
 - * 2차 국가어항 신규지정항 : 송도항, 개야도항, 진두항, 당목항, 오천항
- 추가 5개항 개발착수('17~)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신규어항 개발>								
사업비	신규어항 개발	41,000	1,000	2,500	7,500	10,000	20,000	657,500
세부사업	○ 지정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5개소	5개소			
	○ 국가어항 확대 개발 추진				5개소	5개소	(계속)	(계속)

2) 어항지정기준 개정 추진

(1) 사업개요

-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어항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검토

(2) 사업내용

- 현행 어항지정기준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어업여건 변화와 특례조항 등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지정기준 현실화 마련
 - (현실화) 어업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재적어선 척수 및 톤수 기준치 변경
 - (정확성 제고) 어선 입출항 이용빈도를 고려한 정확한 통계기준 채용
 - (형평성 확보) 여객선 및 유도선 기준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 (여건변화 수용) 어항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새로운 지정기준 채용(특례조항)

1.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				
구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재적어선	척수	60척 이상		
	총톤수	400톤 이상	250톤 이상	320톤 이상
외래어선 이용빈도(년간)		500회 이상		
위판량		연간 200톤 이상		
어가수		140호 이상	300호 이상	190호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특례 조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인 경우				
2.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3) 어항 지정 Up-Down 제도 도입

(1) 사업개요

- 어항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통해 탄력적인 어항개발을 유도하고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추진과 시범도입

* '16년도에 동·서·남해권역로 각 1개소 Up - Down제 시범 도입

(2) 사업내용

- (유휴어항) 국가어항 중 수산업 기능이 쇠퇴하여 어항지정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경우 국가어항 지정을 해제하여 관광, 수산업클러스터, 교육, 연구, 민간매각 등 기능을 전환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
- (국가어항 확대 개발) 지방관리어항 중 최근 어장변화 및 환경변화로 인해 어항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어항이용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확대 개발

구분	현행	개정(안)
어촌어항법 (제17조 제4항)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임의조항)
시행규칙 (제10조)		(지정기준 변경 및 해제기준 신설) ① 제17조제4항 규정에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의미한다. 1. 상위 등급 어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시 2. 지정기준 항목 중 5년간 3가지 이상 항목이 지정기준 50%를 미달할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어항 지정이 해제되거나 하향 조정될 때 어항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능의 전환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비에산 사업으로 추진)

2.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개발

1) 노후어항 정비 및 해양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한 정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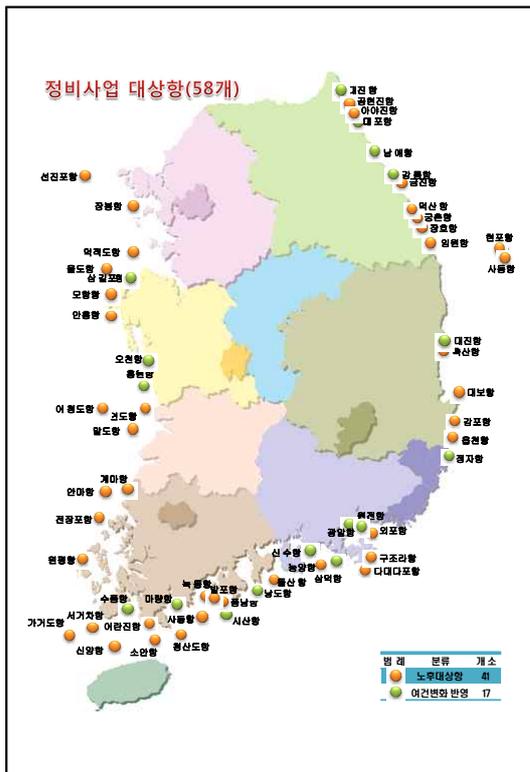
(1) 사업개요

- 어항 노후화 및 해양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2) 사업내용

- 어항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수요 뿐만 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정비수요를 고려하여 어항정비사업 대상항을 58개항으로 확대

- * 개발수요(기존→변경) : 어항정비사업(42개항 → 58개항)
- * 정비사업 대상 58개항 중 14개항 사업 완료('18년까지)



시도	항수	항명
인천	4	선진포항, 장봉항, 덕적도항, 울도항
울산	1	정자항
강원	11	공현진항, 아야진항, 금진항, 덕산항, 공촌항, 장호항, 임원항, 대진항, 대포항, 남해항, 강릉항
충남	5	안흥항, 모항항, 오천항, 삼길포항, 흥원항
전북	3	어청도항, 연도항, 말도항
전남	18	계마항, 안마항, 서거차항, 녹동항, 청산도항, 소안항, 가거도항, 전장포항, 어란진항, 사동항, 풍남항, 돌산항, 원평항, 발포항, 마량항, 시산항, 낭도항, 수품항
경북	7	축산항, 감포항, 읍천항, 대보항, 사동항, 현포항, 대진항
경남	8	구조라항, 다대다포항, 외포항, 능양항, 삼덕항, 신수항, 원전항, 광암항
제주	1	신양항
계	58	

주) ___항은 '18까지 완료 예정항임(14개항)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어항개발>								
사업비	노후어항 정비 및 해양환경 여건변화 대응한 정비 확대	336,577	119,039	78,466	54,072	41,000	44,000	529,354
세부 사업	○노후어항 정비개선		6	2	6	(10)	(11)	(계속)
	○어항 유지보수사업		1식	1식	1식	1식	1식	(계속)

※ 사업량은 완공항수 기준임

2) 어항의 특화개발 확대 추진

(1) 사업개요

-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아름다운 어항 조성, 어촌 마리나역 육성 등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 및 국민에게 휴식·레저 공간 제공

(2)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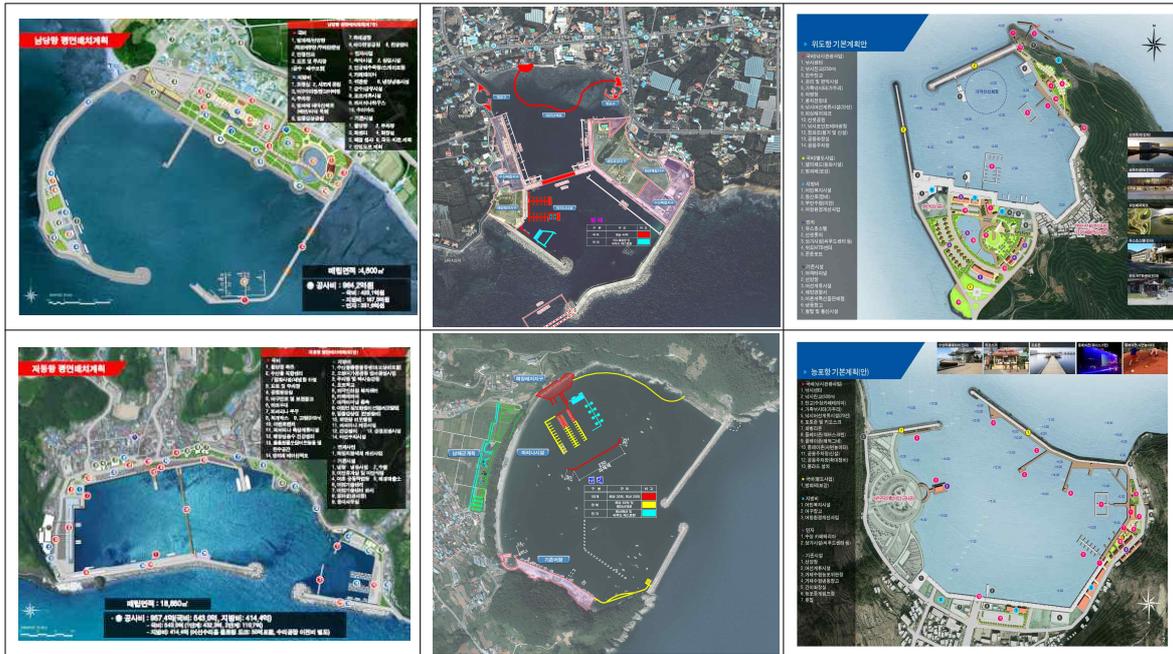
-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유형별*로 유도하여 어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 통해 추진

* 다기능어항 유형(복합형, 낚시관광형, 피서리나형, 자원조성형)

- 지자체 공모와 전문가 평가결과, 개발수요가 높은 복합형, 낚시관광형은 확대하여 추진하고, 유희어항 개발과 중복되는 자원조성형은 미추진*

* 복합형(3개→5개), 낚시관광형(1개→3개), 피서리나형(5개→2개), 자원조성형(1개→0개)

- 선정된 10개항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추진('15), 사업계획에 따라 10개항 개발 추진 및 사업 평가('16~'18)



○ (아름다운 어항 조성) 어촌어항이 보유한 자연경관, 기능적 가치 및 문화가 있는 어항으로서 한국형 아름다운 명소 브랜드를 개발 하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 창출을 도모

- 지자체 공모,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대상항(4개항) 선정*하고 「국가 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 기본계획 수립(14)

* (당초) 해역별 3대 미항 추진 → (변경) 제주해역 추가하여 4대 미항 추진



- 4개항에 대한 실시설계 수립(15)과 4대 미항 조성사업 및 사업 평가 (16~18) 추진 후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확대 개발 방안 마련

- (어촌 마리나역 육성) 어항 내 여유수역을 활용하여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 운영중인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해양 레저 네트워크 구축
 -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 대상항 선정 (16개항)* 및 개발계획 수립('14)
 - * 신규개발(9개소) : 대진항(강원), 삼길포항, 전장포항, 우이도항, 서거차항, 초도항, 연도항(전남), 매물도항, 신양항
 - * 기 개발(2개소) : 오산항, 격포항
 - * 다기능어항 개발중(5개소) : 저동항, 옥지항, 물건항, 남당항, 위미항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항의 특화개발 확대 추진>								
사업비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315,300	5,000	10,000	50,000	100,000	150,300	974,000
세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식				
	○다기능어항 개발				5개소	5개소	(완료)	(사업확대)
	○사업평가						1식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비	아름다운 어항 조성	40,700	-	500	12,000	12,000	16,200	170,000
세부 사업	○공모 및 선정							
	○개발계획 수립		1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1식				
	○4대 미항 조성				4개소	(계속)	(완료)	확대
	○사업평가						1식	
<어촌 마리나역(驛)어항 육성>								
사업비	어촌 마리나역 어항 육성	28,700	500	2,000	8,000	8000	10,200	-
세부 사업	○대상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어촌 마리나역 어항 육성(14개소)			1개소	4개소	4개소	5개소	
	○사업 평가						1식	

3) 수산물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청정어항 도입

(1) 사업개요

-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산거점 어항의 인적·물적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2) 사업내용

- 수산거점 어항의 어항구역 전반에 걸쳐 물리·화학·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환경개선 프로그램 도입, 위생 관리 교육 등 종합적인 정비 추진

* 생물학적 위해요소(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 대장균, 0-157, 노로바이러스, 기생충 등)

- 청정어항에 대한 개념 및 기본계획 수립('15) 및 시범사업 1개소 추진과 사업 평가('16~'18) 추진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어항개발>								
사업비	수산물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청정어항 도입	20,500	-	300		10,000	10,200	미정
세부사업	○기본계획 수립		-	1식	-	-	-	-
	○시범사업 추진		-	-	-	1개소	계속	미정
	○사업평가 수행		-	-	-	-	1식	미정

※ 사업량은 완공항수 기준임

4) 지방어항 개발수요

- (지방어항 신규개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설 부족 및 사용 불편이 대두되는 어촌정주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신규개발 추진
 - 지방어항 지정·개발 협의시 어항지정 Up-Down제 도입에 따라 해당 시·군내 이용이 저조한 지방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하향 조정 시 우선적으로 협의
 - 지방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이용 활성화 정도, 개발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시급성 등을 검토
 - * 지방어항 완공율이 저조한 시·군은 신규개발보다 기존 지방어항의 완공위주 집중투자를 유도
 - 제2차 발전기본계획(2014~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16개 항에 대해 어촌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 개발 하는 것이 타당함
 - *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결과 반영(인천 1개소, 충남 2개소, 전남 5개소, 전북 1개소, 경남 7개소)

3.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1) 어촌 6차산업화 확대 추진

(1) 사업개요

- 유무형의 어촌자원으로 2차(제조, 가공), 3차(유통, 관광, 서비스업)를 융합·연계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 수산·어촌 관련사업의 분절적 지원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품개발, 판매방식 도입, 시장·판로개척 등을 통해 소득,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 공동체 안정화 도모



(2) 사업내용

-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 6차산업화 사업자의 창업·경영컨설팅 지원, R&D 지원, 사업성과 점검 등 역할을 하고, 중앙·해역별 지원센터로 이원화
 -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은 2년, 10억으로 추진하였으나, R&D 통한 기술력 확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해 3년, 30억으로 확대 추진
- * (현행) 2년, 10억 → 3년, 30억(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조정, 성과평가 통해 결정

- 어촌 6차산업화 사업자 제반여건 수준(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차등화 지원*

* 차등지원 : (도입기) 3년 30억 → (성장기) 2년 10억 →(성숙기) 1년 5억

< 6차산업화 사업자 제반여건에 따른 맞춤형 차등화 지원방안 >

구분	특징	사업기간/ 지원규모	사업물량
도입기	사업자가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등 제반여건을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	3년/ 30억	60개소
성장기	사업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융복합을 통해 부분적인 성과에 머물러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태	3년 / 10억	30개소
○ 성숙기	사업자 스스로 6차산업화 수준에 이르렀으나 핵심 R&D를 통한 상품개발, 판로개척이 미흡한 상태	3년 / 5억	10개소

주 : 사업물량은 예산당국 협의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사업비	어촌 6차산업화 확대 추진	37,050	1,550	1,250	6,750	11,750	15,750	미정
세부사업	○ 기본계획 수립		300	-	-	-	-	-
	○ 시범사업 추진		5개소	5개소	-	-	-	-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	-	3개소	3개소	3개소	계속
	○ 본 사업 추진		-	-	10개소	10개소	10개소	65개소

2) 명품 어촌·어항 조성

(1) 사업개요

- 낙후된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을 통해 국민행복 충전소 및 세계적 관광명소로서의 명품 어촌·어항 조성

(2) 사업내용

- 어촌다움을 추구하되, 어촌·어항의 문화컨텐츠를 발굴 하여 생태·경관적 요소와 연계시킬 수 있는 주민 주도형 브랜드 창출 및 명소화

제주 김녕항



부안 격포항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사업비	명품 어촌어항 조성	35,000	-	-	10,000	10,000	15,000	15,000
세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300	-	-	-	-	-
	○시범사업 추진		-	-	4개소	4개소	-	-
	○본 사업 추진		-	-	-	-	6개소	계속

3)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1) 사업개요

- 어촌·어항·어장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촌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권역별 사업 추진

(2) 사업내용

- (융복합화) 예술, 문화활동과 창조·문화산업 등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소프트, 인적지원
- (어촌자원 가치제고) 어촌자원 및 상품의 기술혁신 및 품질개선, 마케팅과 유통의 혁신, ICT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어촌자원 가치 제고
- (삶의 질 향상) 어촌의 환경개선, 문화보전, 삶의 질 향상,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 (거버넌스 강화) 어촌 리더와의 협력강화, 주민 역량강화, 전문가 연계 강화, 수산어촌 분야 통계구축 및 사업성과 정량화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사업비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60,500	-	-	500	30,000	30,000	미정
세부 사업	○기본계획		-	1식	500	-	-	-
	○시범사업 추진		-	-	-	6개소	6개소	-

4) 어촌마을 정주환경 리모델링

(1) 사업개요

- 어촌마을의 주거환경(주택,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어촌지역의 삶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공공영역) 마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마을경관정비(담장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어촌계획관,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등), 어항기본시설(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마을단위로 정비
- (민간영역) 개별 주택정비, 육상수산시설(양식장), 소득시설(특산물 판매장 등) 정비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사업비	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9,100	-	100	-	3,000	6,000	미정
세부 사업	○ 정책연구		-	1식	-	-	-	-
	○ 시범사업 추진		-	-	-	1개소	-	-
	○ 시범사업 평가		-	-	-	-	-	-
	○ 본 사업 추진		-	-	-	-	2개소	계속

5) 어업유산 지정·관리

(1) 사업개요

-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관리·지정함으로써 어촌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어업유산 준비 지원)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예비계획 관리*와 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예비계획 관리 : 대상공모 → 예비계획 접수 → 서류평가 → 현지평가 → 선정 및 지정

- (어업유산 지정 지원) 어업유산 이해도 증진을 위한 지자체, 지역 주민 대상 워크숍 및 교육 진행, 보전방안(가치훼손방지, 보존계획)
- (GIAHS 등재 지원)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신청을 위한 제반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 (어업유산 활성화 지원) 어업유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CI 제작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사업비	어업유산 지정·관리	1,100	-	275	275	275	275	미정
세부 사업	○ 어업유산 발굴·정비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계속
	○ 어업유산 관리·지원·홍보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계속

4. 어촌·어항정책의 선진화 방안

1) 어항 운영·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

(1) 사업개요

- 어항관리청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운영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

(2) 사업내용

- (전문기관 설립) 어항관리청의 역할을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어항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거버넌스 체계 구축) 어항 운영관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 어항의 이해당사자 간 협력 등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
- (법제도 개선) 어항 운영관리 전담기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정 추진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촌·어항정책의 선진화 방안>								
사업비	어항 운영관리 전문기관 설립 운영	3,000	-	-	-	1,000	2,000	미정
세부사업	○ 전문기관 설립			-	-	1,000	2,000	미정
	○ 거버넌스 체계 구축(비예산)							
	○ 법제도 개선(비예산)							

2)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수립

(1) 사업개요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개도국 대상 성공적인 어촌개발모델(KSP)을 개도국으로 확산

(2) 사업내용

- (글로벌 어촌체험마을 지원) 방한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홍보, 통역사 사무장 등 필요한 사업 지원
- (국제협력 강화) 성공적 어촌개발모델로써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개도국에 국제협력 사업으로 지원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촌·어항정책의 선진화 방안>								
사업비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5,600	-	-	500	2,000	3,100	미정
세부 사업	○글로벌 어촌체험마을 지원		-	-	-	1개소	2개소	미정
	○사업평가		-	-	-	-	1식	미정
	○KSP 국제협력 강화		-	-	-	1개소	1개소	미정

제5장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

1.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투자방향

2. 수정계획 투자소요 예산

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투자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2014~2018)

(1) 중장기 확대균형으로 재정기조 전환

- 단기적으로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운용
- 일자리 창출 등 내수경기 부양과 창조경제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 핵심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안전투자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

(2) 재정의 중장기적 기초체력 강화

- 지출확대 → 내수회복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 지속 추진
-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재정 위험 관리 강화

(3) 국민 눈높이 예산 지향

- 국민·현장과의 소통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 정보 공개 확대 등 재정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
-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사례 근절을 통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

2. 수정계획 투자소요 예산

1) 수정계획 총괄 예산

추진 전략	세부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4,511	3,235	3,579	4,824	5,934	6,940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소 계)	2,583	60	82	539	900	1,002
	어촌 6차 산업화 추진	371	15	13	67	118	158
	명품 어촌·어항 조성	350	-	-	100	100	150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605	-	-	5	300	300
	어촌관광 활성화	1,222	45	62	358	373	384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35	-	7	9	9	10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소 계)	324	19	36	51	94	124
	도시-어촌상생 강화	69	2	15	22	15	15
	어촌 복지·환경 개선	162	-	2	10	60	90
	어촌경영 안정화	93	17	19	19	19	19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소 계)	4,701	117	257	844	1,462	2,022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4,273	93	225	740	1,320	1,895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207	-	5	25	100	77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221	24	27	79	42	50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소 계)	16,903	3,039	3,204	3,390	3,478	3,792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 구축	210	0	3	5	100	102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어항 조성	16,283	3,029	3,176	3,310	3,278	3,490
	여건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	410	10	25	75	100	200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어촌부문

전략 과제	세부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907	79	118	590	994	1,126
	(소 계)	2,583	60	82	539	900	1,002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어촌6차산업화 추진	371	15	13	67	118	158
	명품 어촌·어항 조성	350	-	-	100	100	150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235	40	45	50	50	50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56	-	-	5	20	31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920	5	15	300	300	300
	어업유산 지정관리	11	-	2	3	3	3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	17	-	4	4	4	5
	어촌현장밀착형 인력지원 및 육성	18	-	3	5	5	5
	(소 계)	324	19	36	51	94	124
	지속 가능한 어촌 구현	자매결연 강화	30	-	6	8	8
재능기부 활성화		15	-	2	7	3	3
어촌찾아가기 활성화사업		24	2	7	7	4	4
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91	-	1	-	30	30
낙도지역 복지 사각지역 지원		71		1	10	30	30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33	5	7	7	7	7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60	12	12	12	12	12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어항부문(전략과제별)

전략 과제	세부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 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1,604	3,156	3,461	4,234	4,940	5,814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소 계)	4,988	122	277	924	1,542	2,124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3,153	50	100	500	1,000	1,503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아름다운 어항 조성	407	0	5	120	120	162
	어촌역' 어항육성	287	5	20	80	80	102
	어항 유희부지 활용	207	0	5	25	100	77
	수리현상 모니터링추진	75	15	15	15	15	15
	어항종합정보시스템	116	9	12	64	17	15
	어항 운영관리 전문기관 설립 운영	30	-	-	-	10	20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구축	(소 계)	16,616	3,034	3,184	3,310	3,398	3,690
	청정어항 도입 추진	210	0	3	5	100	102
	어항수질 관리기반구축	-	-	-	-	-	-
	위생관리 어항 조성	-	-	-	-	-	-
	어항시설 조기완공	8,729	1,582	1,596	1,705	1,950	1,896
	취약어항시설 적기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노후어항 정비 개선	3,366	1,190	785	541	410	440
	신규어항 개발	410	10	25	75	100	200
	어항편의시설 지속확충	343	23	80	80	80	80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어항부문(법정사업군별)

전략 과제	세부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1,604	3,156	3,461	4,234	4,940	5,814
어항 기본 사업	(소 계)	9,139	1,592	1,621	1,780	2,050	2,096
	국가어항	1,707	253	239	255	480	480
	지방어항	4,851	911	940	969	1,000	1,031
	어촌정주어항	2,281	428	442	456	470	485
	마을공동어항	300	-	-	100	100	100
어항 정비 사업	(소 계)	6,924	1,419	1,480	1,445	1,168	1,412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	-	-	-	-	-
	어항 노후시설 정비사업	3,366	1,190	785	541	410	440
	취약 어항시설 적기 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어항 환경 개선 사업	(소 계)	3,958	91	263	650	1,100	1,854
	복합형 다기능어항	2,078	25	50	300	500	1,203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아름다운 어항조성	407	-	5	120	120	162
	유희어항 활용	207	-	5	25	100	77
	청정어항 도입 추진	210	-	3	5	100	102
	위생관리 어항 조성	-	-	-	-	-	-
	어항편익시설 조성	343	23	80	80	80	80
레저 관광 기반 시설 사업	(소 계)	1,362	30	70	280	580	402
	피서리나형 다기능어항	430	10	20	200	200	-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645	15	30	-	300	300
	'어촌역' 어항 육성	287	5	20	80	80	102
기타	(소 계)	221	24	27	79	42	50
	어항 운영관리 전문기관 설립 운영	30	-	-	-	10	20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91	4	7	59	12	10
	수리현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	75	15	15	15	15	15
	어항수질관리 기반구축	-	-	-	-	-	-
	대국민 홍보	25	5	5	5	5	5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기존 소규모항포구)은 지방비 포함 금액임

2) 당초계획 대비 수정계획 총괄 소요예산

추진 전략	기본계획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원)						수정계획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원)						비고(증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5,364	3,228	3,836	5,399	5,968	6,935	총 계	24,511	3,235	3,579	4,824	5,934	6,940	▲ 853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소 계)	3,990	70	180	1,143	1,226	1,371	(소 계)	2,583	60	82	539	900	1,002	▲ 1,407
	어촌 6차 산업화 추진	655	25	37	119	162	312	어촌 6차 산업화 추진	371	15	13	67	118	158	▲ 284
	어촌 Grand Design 프로젝트 추진	920	-	20	300	300	300	명품 어촌·어항 조성	350	-	-	100	100	150	▽ 353
	어촌관광 활성화	2,380	45	116	715	755	749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605	-	-	5	300	300	▲ 315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35	-	7	9	9	10	어촌관광 활성화	1,222	45	62	358	373	384	▲ 1,158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35	-	7	9	9	10	-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소 계)	483	19	35	51	64	314	(소 계)	324	19	36	51	94	124	▲ 159
	도시-어촌상생 강화	69	2	15	22	15	15	도시-어촌상생 강화	69	2	15	22	15	15	-
	어촌 복지·환경 개선	321	-	1	10	30	280	어촌 복지·환경 개선	162	-	2	10	60	90	▲ 159
	어촌경영 안정화	93	17	19	19	19	19	어촌경영 안정화	93	17	19	19	19	19	-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소 계)	3,718	102	317	714	1,122	1,464	(소 계)	4,701	117	257	844	1,462	2,022	▽ 983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3,320	78	285	610	990	1,357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4,273	93	225	740	1,320	1,895	▽ 953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207	-	5	25	100	77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207	-	5	25	100	77	-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191	24	27	79	32	30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221	24	27	79	42	50	▽ 30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소 계)	17,173	3,037	3,304	3,491	3,556	3,786	(소 계)	16,903	3,039	3,204	3,390	3,478	3,792	▲ 270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 구축	892	1	123	211	308	248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 구축	210	0	3	5	100	102	▲ 682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어항 조성	15,996	3,024	3,156	3,230	3,198	3,388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어항 조성	16,283	3,029	3,176	3,310	3,278	3,490	▽ 287
	여건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	285	10	25	50	50	150	여건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	410	10	25	75	100	200	▽ 125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당초계획 대비 어촌부문 소요예산

추진 전략	세부 사업명	기본계획 투자소요 예산(억원)						비교(증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4,473	89	215	1,194	1,290	1,685	
	(소 계)	3,990	70	180	1,143	1,226	1,371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어촌6차산업화 추진	655	25	37	119	162	312	
	어촌 Grand Design 프로젝트	920	-	20	300	300	300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35	40	45	50	50	50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920	5	15	300	300	300	
	문화어촌 구축	121	-	13	35	40	33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	900	-	30	270	300	300	
	SEA STAY (어촌특화민박)조성	204	-	13	60	65	66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	17	-	4	4	4	5	
	어촌현장실적형 인력지원 및 육성	18	-	3	5	5	5	
	(소 계)	483	19	35	51	64	314	
지속 가능한 어촌 구현	자매결연 강화	30	-	6	8	8	8	
	재능기부 활성화	15	-	2	7	3	3	
	어촌찾아가기 활성화사업	24	2	7	7	4	4	
	어촌정주환경 개선	250 (900)	(200)	(200)	(250)	(250)	250	
	원격의료·교육·문화 지원사업	(45)	-	(15)	(15)	(15)	-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71	-	1	10	30	30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33	5	7	7	7	7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60	12	12	12	12	12	
	(소 계)	324	19	36	51	94	124	▲ 159
	총 계	2,907	79	118	590	994	1,126	▲ 1,566
	(소 계)	2,583	60	82	539	900	1,002	▲ 1,407
	어촌6차산업화 추진	371	15	13	67	118	158	▲ 284
	명품 어촌·어항 조성*	350	-	-	100	100	150	▽ 350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605	-	-	5	300	300	▽ 605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35	40	45	50	50	50	-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추진	56	-	-	5	20	31	▽ 56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920	5	15	300	300	300	-
	어업유산 지정관리*	11	-	2	3	3	3	▲ 889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	-	-	-	-	-	-	▲ 900
	SEA STAY (어촌특화민박)조성*	-	-	-	-	-	-	▲ 204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	17	-	4	4	4	5	-
	어촌현장실적형 인력지원 및 육성	18	-	3	5	5	5	-
	(소 계)	324	19	36	51	94	124	▲ 159
	자매결연 강화	30	-	6	8	8	8	-
	재능기부 활성화	15	-	2	7	3	3	-
	어촌찾아가기 활성화사업	24	2	7	7	4	4	-
	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91	-	1	-	30	60	▽ 91
	낙도지역 복지 사각지역 지원*	71	-	1	10	30	30	-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33	5	7	7	7	7	-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60	12	12	12	12	12	-

※ 주1 () : 타 부서 예산

※ 주2 사업명칭 변경 : 어촌 Grand Design 프로젝트는 명품 어촌·어항 조성으로 사업명칭 변경하여 추진, 문화어촌 구축은 어업유산 지정·관리로 사업명 변경 추진

신규사업 신설 : 명품 어촌어항 조성,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추진

사업 통합 :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 어촌특화민박, 어촌정주환경 개선은 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사업으로 통합 추진, 원격 지원사업과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을 낙도지역 복지 사각 지대 지원사업으로 통합 추진

(2) 당초계획 대비 어항부문 소요예산

전략 과제	기본계획 세부사업명	기본계획 투자소요 예산(억원)						비교(증감)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20,891	3,139	3,621	4,205	4,678	5,250	
	(소 계)	9,014	1,592	1,621	1,755	2,000	2,046	
어항 기본 사업	국가어항	1,582	253	239	230	430	430	
	지방어항	4,851	911	940	969	1,000	1,031	
	어촌정주어항	2,281	428	442	456	470	485	
	마을공동어항	300	-	-	100	100	100	
	(소 계)	7,139	1,424	1,490	1,465	1,268	1,492	
어항 정비 사업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215	5	10	20	100	80	
	어항 노후시설 정비사업	3,366	1,190	785	541	410	440	
	취약 어항시설 적기 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소 계)	3,331	81	343	600	920	1,387	
어항 환경 개선 사업	복합형 다기능어항	1,248	15	30	180	300	723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아름다운 어항조성	307	-	5	90	90	122	
	어항 유희부지 활용	207	-	5	25	100	77	
	(가칭)클린어항 육성	402	-	100	100	100	102	
	위생관리 어항 조성	111	-	3	5	50	53	
	어항편익시설 조성	343	23	80	80	80	80	
	(소 계)	837	15	120	200	300	202	
레저 관광 기반 시설 사업	피서리나형 다기능어항	215	5	10	100	100	-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215	5	10	-	100	100	
	'어촌역' 어항 육성	407	5	100	100	100	102	
(소 계)	570	25	47	185	190	123		
기타	어항이용관리 대책 수립	-	-	-	-	-	-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91	4	7	59	12	10	
	수리현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	75	15	15	15	15	15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379	1	20	106	158	93	
	대국민 홍보	25	5	5	5	5	5	
	(소 계)	221	24	27	79	42	50	▲349
	어항운영관리 전문인력 운영	30	-	-	-	10	20	▽30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91	4	7	59	12	10	-
	수리현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	75	15	15	15	15	15	-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	-	-	-	-	-	▲379
	대국민 홍보	25	5	5	5	5	5	-
	총 계	21,604	3,156	3,461	4,234	4,940	5,814	▽713
	(소 계)	9,139	1,592	1,621	1,780	2,050	2,096	▽125
	국가어항	1,707	253	239	255	480	480	▽125
	지방어항	4,851	911	940	969	1,000	1,031	-
	어촌정주어항	2,281	428	442	456	470	485	-
	마을공동어항	300	-	-	100	100	100	-
	(소 계)	6,924	1,419	1,480	1,445	1,168	1,412	▲215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	-	-	-	-	-	▲215
	어항 노후시설 정비사업	3,366	1,190	785	541	410	440	-
	취약 어항시설 적기 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
	(소 계)	3,958	91	263	650	1,100	1,854	▽627
	복합형 다기능어항	2,078	25	50	300	500	1,203	▽830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
	아름다운 어항조성	407	-	5	120	120	162	▽100
	유희어항 활용*	207	-	5	25	100	77	-
	청정어항 도입 추진*	210	-	3	5	100	102	▲192
	위생관리 어항 조성	-	-	-	-	-	-	▲111
	어항편익시설 조성	343	23	80	80	80	80	-
	(소 계)	1,362	30	70	280	580	402	▽525
	피서리나형 다기능어항	430	10	20	200	200	-	▽215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645	15	30	-	300	300	▽430
	'어촌역' 어항 육성	287	5	20	80	80	102	▲120
	(소 계)	221	24	27	79	42	50	▲349
	어항운영관리 전문인력 운영	30	-	-	-	10	20	▽30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91	4	7	59	12	10	-
	수리현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	75	15	15	15	15	15	-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	-	-	-	-	-	▲379
	대국민 홍보	25	5	5	5	5	5	-

주1)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기존 소규모항포구)은 지방비 포함 금액임

주2) 사업 통합 : (가칭)클린어항 육성, 위생관리 어항조성, 어항수질관리 기반구축 사업은 청정어항 도입 추진으로 통합하여 추진 / 사업명칭변경 : 어항 유희부지 활용은 유희어항 활용으로 변경